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규약 전문>

제정 2002. 9. 28 창립총회

1차 개정 2003. 12. 23 제2차 정기총회

2차 개정 2005. 1. 28 제3차 정기총회

3차 개정 2006. 1. 25 제4차 정기총회

4차 개정 2008. 3. 19 제6차 정기총회

5차 개정 2011. 3. 18 제8차 정기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라 한다. 약칭은 인터넷기자협회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외에 광역시도와 해외에 지부와 회원사 단위로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강령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주권 실현, 언론인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에 힘쓰며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여하한 세력과 맞서 싸운다. 사회진보와 민주개혁을 위한 연대, 조국의 평화통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진보적인 국제언론인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다.

제2장 회원

제4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자료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자격)

1. 정회원은 국내외에서 거주하며 인터넷신문·방송사 등 온라인 언론과 오프라인 언론사, 각종 미디어 소속 현직 기자(시민기자)이며 본회의 강령과 목적에 적극 찬성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언론운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도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언론사로 단체 회원사로 가입하고자 하는 언론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정회원은 언론자유운동과 관련, 강제해직과 지회간 전보, 정리해고, 고용조정 등으로 소속 없이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4. 준회원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가입을 원하지만 그 자격요건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미달한 경우, 심사를 거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5. 자료회원은 본회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간하는 정기·비정기 간행물, 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6. 후원회원은 본회의 강령과 목적에 동의하며 본회를 유·무형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원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7. 명예회원은 본회의 강령과 목적에 비취 본회의 명예를 높이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8. 회원자격 심사와 승인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부칙을 둔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간행물과 시설,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본회의 정회원은 취재·보도활동을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
3. 본회의 정회원은 소속사에서의 부당해고 및 해직, 인권침해와 취재활동시 발생한 언론자유 침해, 부당한 취재거부, 기자 폭행에 대해 본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진정건에 대해 피해조사와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강령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따를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은 탈퇴의 뜻을 유무선 전화, 전자우편,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명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가입 후 3개월 이내, 매년 3월 말일까지 연 회비를 내지 않은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리 및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9조(기구)

본회는 본회에 총회, 대의원대회, 고문, 감사, 운영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하며 지부와 지회, 특별위원회,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총회)

1.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여로 성회한다.
2. 본회 해산, 강령 및 규약 재개정, 임원 선출, 예산·결산, 임원·회원 승인 등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 1/2이상을 포함한 정회원 1/5이상이 발의할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정기총회는 15일 이전, 임시총회는 7일 이전에 미리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1. 본회 운영을 위해 회장, 5인 이내의 부회장, 사무총장, 지부장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의장으로 두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3. 운영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 정족수의 과반수 참가로 성회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원(사) 가입 자격심사, 보도·기자증 발급심사, 회원 상벌, 본회 운영 세부규칙제정, 주요사업계획안 승인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12조(사무처)

1. 본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처를 구성한다.
2. 사무총장은 각종 업무에 대한 집행을 총괄하며 본회 대변인을 겸한다.
3. 사무처 밑에 사무국, 기획국, 조직국, 대외협력국 등을 둘 수 있다.
4. 각 국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5. 각 국별로 5인 이내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국장이 추천하고 사무총장이 승인한다.
6. 사무처는 총회 결정사항 및 회장단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 본회 일상사업에 대한 실무집행을 담당한다.
7. 사무처는 특별위원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집행을 방조한다.
8. 사무국은 본회 재정관리 및 일상적 업무를 집행한다.
9. 기획국은 본회 사업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총괄한다.
10. 조직국은 본회 회원관리 및 조직강화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총괄한다.
11. 대외협력국은 외부단체와의 연대, 협력활동을 책임집행한다.
12. 기타 별도의 국을 구성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3조(지부)

1. 본회는 산하에 광역시·도 지부와 해외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지부는 본회의 강령과 목적에 의거한 사업을 지역에서 펼칠 수 있다.
2. 지부는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한다.
3. 지부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지회)

1. 본회는 각 사에 지회(장)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회는 본회의 강령과 목적에 의거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3. 지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각 지회는 지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5조(대의원대회)

1. 본회는 총회를 대신해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를 의결, 집행할 수 있다.
2. 대의원대회는 중앙 임원, 지부장, 지회장, 창립회원(개별회원 포함) 등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 2/3이상 또는 정회원 1/5이상이 발의할 시 개최할 수 있다.
4. 대의원대회는 회의 시작 7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5. 회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구성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

1. 본회 회원이 규약을 적극적, 의도적으로 어기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징계가 필요할 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들과 감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징계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발생시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4. 별도의 징계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제17조(특별위원회)

1. 본회는 필요할 경우 한시적 또는 상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사무처에서 특별위원회 사업에 대한 실무와 집행에 대한 협력을 받는다.

제18조(분과)

1. 본회는 필요할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과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분과내에 위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처에서 분과사업에 대한 실무와 집행에 대한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정족수)

1.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20조(고문 및 자문(정책)위원)

1.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 활동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고언과 본회 대내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
3.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터넷 저널리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약간명을 자문위원과 정책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고문과 자문.정책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1조(회장)

1.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규정에 의해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회장의 권한)

1. 회장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대표하고 소속 기구, 지부, 지회를 지휘감독하며 부회장,

지부장, 사무총장과 협의해 회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총회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제23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7인 이내로 한다. 부회장 중 1인을 수석(상임)부회장으로 한다. 수석부회장의 경우 총회에서 인준한다. 나머지 부회장의 경우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임면권을 행사한다.

제24조(부회장의 역할)

1.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쓴다.

2. 회장이 유고, 궐위, 탄핵 등의 사유로 회의를 운영하지 못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이 넘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5조(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26조(사무총장의 역할)

1. 회장 등 임원단과 함께 본회의 총괄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2. 본회의 일상적 사업에 대한 집행과 총괄업무를 책임진다.

3. 본회 대변인을 겸한다.

4. 각 국장을 추천하고, 간사를 인준할 수 있다.

제27조(지부장)

1. 본회는 지부를 구성하고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다.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한 활동을 벌이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28조(지부장의 역할)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에 맞게 지부의 사업과 업무를 책임진다.

제29조(감사)

1.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30조(감사의 역할)

1. 감사는 본회의 운영, 재정 및 경리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감사의 정기감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

제31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 궐위시에는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3. 임원은 임기중 소속사로부터 부당하게 퇴직 당했을 때에도 잔여 임기를 재임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대우)

1.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본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회장, 사무총장, 지부장, 각 국장 및 상근간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임원의 본회 활동과 관련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임원의 의무)

1. 임원은 업무의 성실한 인계인수 의무를 지니며 회장과 사무총장은 차기 회장·사무국장 당선자와 함께 2주일 이상 본회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월해야 한다.
2. 임원의 인수인계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재정

제34조(본회의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가입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회단체 및 주식회사, 개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기부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3.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35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 및 결산 심의)

1. 총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확정한다.
2. 총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정족수 미달로 예산 및 결산 안이 상정되지 못했을 경우 대의원 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확정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총회나 이에 준하는 기구(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37조(포상규정)

1. 본회의 명예를 고양시킨 회원, 언론자유를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본회의 강령과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공적심사 및 선정, 포상금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징계규정)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 과반수 의결로써 징

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본회의 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적극적·의도적으로 위반한 자
3. 본회의 윤리강령(별도 제정)을 위반한 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제청한 경우)
4. 위 조항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 운영위원 과반수 발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9조(징계구분)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의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며 3회 주의를 받을 시 경고에 준한다.
2. 경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 경고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한다. 3회 경고시 자격정지에 준한다.
3.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그 기간동안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
4. 제명 : 회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한다.

제40조(경조사 부조)

1. 본회는 회원(사)의 각종 경조사, 행사에 부조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4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2조

본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3조(발기인·창립회원)

본회 결성은 본회 취지에 적극 찬성한 다음의 언론사 소속 기자(시민기자)와 언론인이 발기해 2002년 9월 28일 창립했다.

(가나다순) 김제시민의 신문 서민철 서울지사장, 오병환 서울주재기자 / (인터넷)군산방송 전성룡 기자 / 국제민주연대 발행 격월간 「사람이 사람에게」 노진선미 기자 / (경기) 광주뉴스 이수남 취재부장, 김관현 기자, 한상미 기자 / 남양주뉴스 구준서 기자 / (인터넷신문) 대자보 이창은 발행인, 송영호 기자 / 디지털광진 흥진기 기자 / 디지털 말 이준희, 김재중 기자 / 디지털 성남일보 모동희 편집장, 김태진 본부장, 김락중 기자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임선아 인터넷분과장, 이희완 정보화 상근간사 /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윤원석 대표, 이정무 기자, 김경환 기자, 이정미 기자 / 주간 민주신문 나금주 기자, 문지연 기자 / 바른지역언론연대 김철관 기자 /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 정운현 편집국장, 이종찬 시민기자, 송명호 시민기자(하나라포터), 김태섭 시민기자, 정거배 시민기자 / 유뉴스 박종진 운영실장, 이경현 기자(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남양주) 와부포럼 정명현 기자 / 순창아이뉴스 김래진 발행인 / 순천이뉴스 김천해, 허상 기자 / 시민뉴스 박성태 기자 / 시민의 신문

(엔지오타임즈) 조대기 편집국장, 김윤희 기자, 김세옥 기자! , 양계탁 사진팀장 / 시티뉴스
구경선 발행인, 고승선 기자, 조은환 전문기자, 안창도 기자, 이훈범 기자, 방세환 기자 / 전
국매일신문 정치부 권성오 차장 / 참세상방송국 김용욱 방송국장, 정용택 보도팀장 / 코리
안라이프 서정상 기자 / (고려대 인터넷언론) kunet 강도환 편집장 / peopletv 권병안 기
자, 박종현 기자 / (인터넷한겨레) 하니리포터 남경국 기자 / 한겨레언론연구소 박해전 대표
(전 한겨레 기자) / 한겨레신문 정화영 만평초대작가(하니리포터) / (김천) 한길정보넷 신종
식 대표, 박원진 기자 / 부천타임즈(준) 양주승 기자